

2017년도 안양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7. 4. 21.~ 4. 28.(6일간)
- 감사분야 : 2014년 3월 이후 소방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 감사결과

감사결과			처분계획						
			행정상(건)		신분상(명)			재정상(천원)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시정	주의	징계	경고	주의	회수	과태료
15건	10건(29명)	2건(3,500천원)	6	9	-	5	24	-	3,500

II 주요 지적사항

○ [인사·행정] 교육훈련성적(전문교육) 평정 부적정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행하는 전문교육과정은 3일 이상(16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시간당 0.04점 이내로 평정하고, 집합교육(3일 이상)과 사이버교육을 혼합하여 편성한 경우에는 사이버교육을 집합교육 7시간으로 평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2014년 상반기(2014.6.30.기준)와 하반기(2014.12.31.기준) 근무성적평정 시 교육훈련성적 중 전문교육에 대한 평정을 하면서 지방소방☆ ㉠㉠㉠이 이수한 "소방시설(전기)" 전문교육 과정에 대해 '입교 前 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의 7시간으로 하여 시간당 0.08점을 곱한 0.56점으로 평정하여야 하나, 사이버교육 182시간에 시간당 0.08점으로 산출하여 14.56점으로 평정하였고, ㉠ 2016.06.30. 개정 前
- 2016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시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이 2016.6.30.자 개정·시행되면서 전문교육과정의 시간당 점수가 0.08점에서 0.04점으로 변경되어 지방소방☆ ㉠㉠㉠이 이수한 "소방시설(전기)" 전문교육 과정의 '입교 前 사이버교육' 시간

(7시간)에 대해 0.04점으로 산출하여 0.28점으로 평정하여야 함에도, '입교 前 사이버교육'을 7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82시간을 그대로 0.04점으로 산출하여 평정점 7.28점을 부여하였으며,

- 2016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시에는 지방소방☆ ㉠㉠㉠이 이수한 "소방시설(전기)" 과정의 '입교 前 사이버교육'에 대해 시간당 점수가 잘못 평정된 것을 인지하고 '입교 前 사이버교육' 7시간에 개정된 점수 0.04점을 산출하여 0.28점으로 평정하여야 하나, 경력·교육 훈련성적·가점 평정표에 오다로 0.24점으로 표기하는 등 교육훈련성적 평정 업무 소홀
- ❖【관련규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11조(전문교육 평정)

○ [예산·회계] 소방자동차 등의 주요부품 점검·교환 주기 미준수

- 소방장비 관리규칙에 따르면 5,000 ~ 10,000km 또는 1년마다 엔진오일을 교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자동차 제작사의 기준에는 20,000km마다 교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 생활안전 등 7대의 소방차량에 대하여 짧게는 1,376km에서 길게는 16,410km를 운행한 후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소홀로 부정기적인 엔진오일 교환
- ❖【관련규정】 소방장비 관리규칙 제14조(소방장비 안전관리) 및 제26조(소방장비의 점검방법)

○ [재난대응·안전] 구급활동 상황의 기록유지 업무 소홀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 구급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구급활동일지에 구급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구급대원 지방소방△ ○○○ 등 13명은 2014.3월부터 2017.2월까지 감사기간 동안 응급환자를 이송하면서 환자평가시 활력징후를 모든 환자에 대하여 측정하고, 측정거부시 거부사유를 자세히 기록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총 584명의 활력징후 측정을 하지 않는 등 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 업무를 소홀히 함.

❖【관련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구급대 운영지침 10)

○ [예방·민원] 현장처리 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업무 소홀

- (방염성능검사 미실시) 현장방염처리물품의 중복검사를 해소하고자 제조 또는 가공 과정에서 방염처리 되는 인테리어필름과 인테리어필름 부착 합판을 동시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방염성능기준이 개정(2013.7.10.)됨에 따라 개정 이후 제품부터 소방관서의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업무에서 제외되었으나,
 - A 숙박시설은 2010.11.4. 검사된 인테리어 필름임에도 불구하고 방염성능검사 미실시
- (방염기준 불합격 대상 성능검사성적서 발급) 합판, 섬유판, 목재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 5초 이내, 잔신시간(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 20초 이내, 탄화면적 50cm² 이내, 탄화길이 20cm 이내여야 하는데도,
 - B 일반음식점 등 탄화면적이 51.4cm²로 불합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발급
- (방염성능검사 절차 소홀) 특정소방대상물의 현장 방염처리 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신청 시 임의로 절취한 목재 및 합판 시험체(가로 29cm× 세로 19cm)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시험체는 (40±2)℃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제습용 기구) 안에 2시간 동안 넣어 두어야 하는데도,
 - C 일반음식점 등 3개소에 대하여 위 절차를 생략하고 방염성능검사 측정
- (민원서류 접수 지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데도,
 - D 일반음식점 등 3개소의 방염성능검사신청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 제출일보다 1일 지연하여 접수 처리

❖ 【관련규정】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3조(방염성능검사 신청)

방염성능기준 제7조(합성수지판, 합판등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수범사례 1 구급 품질관리 중간관리자(Supervisor) 운영

□ 추진개요

- 현재 품질관리의 주체가 구급대원 본인으로서 구급활동 모니터링 곤란
- 구급대원의 개인별 응급처치 시행율·적절성 제고 한계

□ 정책과제

- 내부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한 품질관리 운영 및 구급대원 경력개발 지원

□ 세부계획

- 구급경력자의 현장 정보·경험을 활용한 구급활동 피드백 강화

1) 품질관리 중간관리자(Supervisor) 운영

- (운영방법) 각 안전센터(대) 구급대원 모니터링 중간관리자 지정
- 품질수준 진단, 취약부분 보강, 품질관리단과 개선방안 논의
- (기대효과) 기존 정량적인 품질평가에서 개인별 정성적 모니터링으로 현장 활동의 정확한 평가 및 보완 방법 도출

2) SNS를 활용한 구급대원 특별교육(품질관리 교육) 실시

- (교관/대상) 구급지도의사 / 구급대원 및 펌블런스대원



3) 관리방법

- 매 월말 기준, 센터(대)별 품질관리 결과 산출하여 공지

□ 기대효과

- 구급대원의 고품질 전문처리 제공을 통한 소방률 향상
- 구급대원 집합교육 등 비번활동 최소화
- 『비번 초과근무 운영기준』에 의한 특별교육 실시 ➡ 예산절감.

수범사례 2 소화기 거꾸로 흔들기 점검표 설치 운영

□ 추진배경

- 소화기의 비치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는 현 상황에서 소화기 거꾸로 흔들기 점검표 설치를 통해 효율적인 소화기 관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기존 소화기 점검표 운영방식 탈피 새로운 방법 적용
- 자연스러운 소화기 흔들기(거꾸로 들기) 생활화 자연유도
- 소방특별조사 시 소화기 관리 효율성 안내 및 자석스티커 배부

□ 추진결과(성과)

- 겨울철 소방특별조사 대상 269개소 소화기 점검표 자석스티커 배부
- 2016.12.05.~2017.02.28. / 00노래방 포함 269개소 / 1,320천원 소요
- 제작(안) 및 관련사진



□ 기대효과

- 소화기 점검시 자연스럽게 소화기 바닥면 점검표에 체크하면서 소화기 관리 효율 증진
- 자석스티커 코팅재질 제작으로 반영구적 사용 및 캐릭터 삽입으로 친근한 소방이미지 제고